

6. 監査要領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 건설국의 각과별로 94. 1. 1.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94 洞管内圖製作設置에 關한 行政事務 調查結果 報告書(案)

1995년 9월 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調查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동 관내도 제작 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調查期間

1995. 9. 2. (土)-1995. 9. 23. (土)[22일간]

3. 調查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총무과)
- 동사무소 (기설치된 20개동)
- 해당 제작업체 (을지차트, 우진기획)

4. 調查實施 經過

가. 調查班의 編成

구 분	조 사 위 원	대상기관	조사장소	사무직원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간 사] 이인구 [위 원] 김효철, 박영길,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마포구청(총무과) 동사무소(20개동) 해당제작업체(을 지차트, 우진기 획)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실	박관수 전문위원 이준범

나. 調查日程 및 場所

일 자	조사대상부서	조사장소	조 사 방 법	비 고
95. 9. 2. ~ 95. 9. 11.	마포구청 (총무과 및 20개동사무소)	○관내도 제 작설치 현 장 ○조사특별위 원회실	○조사관계 자료수합 ○조사계획서 수립채택(위원회)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조사계획 통보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 석요구서 이송 ○조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 악, 정보수집활동 ○위원장, 간사 선임	
95. 9. 12. (火)	마포구청 (총무과)	○조사특별위 원회실	○증인선서 ○'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관한 총괄적인 현황 보고 청취 ○총괄질의	
95. 9.13. (水)	마포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20개동)	○현장	○증빙자료 정밀검토 및 문 제점 파악 ○정보수집 활동	

일 자	조사대상부서	조사장소	조 사 방 법	비 고
95. 9. 14. (木)	마포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20개동)	○조사특별위 원회실	○증인선서 ○제작경위 및 개별질의	
95. 9. 15. ~ 95. 9. 22.	마포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20개동)	○조사특별위 원회실	○조사결과 수합 ○결과보고서 작성	

5. 主要調査 實施內容

사 항 별	주 요 조 사 실 시 내 용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도 제작 설치 배경 ○제작 설치 추진 절차 및 문제점 ○구에서 입찰을 통한 일괄제작을 하지않고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 및 배경 ○제작 및 설치가격의 적정성 여부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사항 전달과정의 문제점 ○사업추진 결정과정의 체제상 문제점 ○先일괄제작 자시후 事後 회계서류 작성여부 확인 ○예산 지원 여부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게된 배경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 ○수의계약의 절차상 문제점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이유 및 문제점 ○견적서 노임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여부 ○회계관계 서류가 동일인 필적으로 작성하게된 경위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의식 및 근무자세

6. 調査結果 處理意見

가.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

- 업무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구청 담당 직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회의를 소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절차에 의한 정확한 지시로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방침이 결정된 후에 추진하

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업무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진과정에 대한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추진과정이 선명치 않은 점등은 오해의 소지도 야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가 요구됨.
- 관내도 재작설치와 같이 各洞 공히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등을 통하여 추진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등을 강구 해야 할

것임.

○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착오등의 실수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업무지시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 집행기관에서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健議事項

○ 본조사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발견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은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시정하고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은 물론 예방 감시활동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다. 處理意見

○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95. 11. 24.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 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1995. 11. 9.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마포구 하중동 82-4
성명: 전춘환 외 740인

나. 소개의원: 한대운의원

다. 접수일자: '95. 10. 11.

라. 회부일자: '95. 10. 13.

마. 상정일자: 제34회의회(임시회)제2차위원회(95. 11. 8.)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마포구 하중동 58번지 2호와 상수동 282번지 1호 사이 폭 6M,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96년초에는 꼭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한대운 의원)

마포구 하중동 58-2부터 상수동 282-1까지 폭 6M,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96년초에 개설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위지역은 '9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81호)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을 하고 마포구(고시 제3호)에서도 '95. 2. 13일자로 지적고시된 소방도로(일반도로)로서 도시계획공고까지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개설되지 못하여 주민의 원성이 아주 높으며 강변도로변으로 소음은 물론 먼지와 매연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주민의 이런 불편한점을 심분 감안하여 꼭 소방도로가 신설될 수 있기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망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본 청원의 요지는 마포구 하중동 58번지 2호와 상수동 282번지 1호 사이 폭 6M,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 지역은 강변북로 대로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환경조건과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시정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도로의 개설만이라도 되어야만 제반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은 1995년 2월 13일 마포구 고시 95-3호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도로개설 사업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마포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어 공사 우선순위와 보상비를 포함한 약 12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공사 비용의 확보가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다고 사료되나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15M 이하로 구정에서 개설해야되는 91건의 소방도로가 근년에 된 것인지 30~40년전부터 내려